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헌장(안)

Women's Caucus for Gender Justice에 의한 VAWW-NET Japan을 위한 수정안

전문(제안)

제2차 대전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계는, 국경을 초월한 전쟁과 내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제2차 대전의 많은 피해자, 생존자, 특히 성폭력 범죄의 여성피해자가, 정의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판제도는, 국내 재판제도도 국제 재판제도도, 여성에 대해 자행된 범죄의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도 못했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지도 못했습니다.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은, 공적인 입장에 있지 않은 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정부와 군대와 동료가, 세계적으로 받아 들여진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의 룰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받아야 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도덕적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해국(일본)의 복수의 조직,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국가들(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북한)의 조직, 그리고 저명한 전문가와 인권운동가로 구성되는 국제자문위원회는, 이에 여성국제전범법정(이하 「법정」)을 설치합니다. (만일 이 문서를 「협정」으로 한다면, 합의를 교환하는 각 주체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 「법정」이, 제2차 대전 중에 일본제국군이 설치한 「위안소」에서 고통받은 전 「위안부」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전 「위안부」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많은 피해여성이, 자신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죄를 인정하는 말이나 사죄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법정」국제실행위원회는, 세계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모든 사실을 알도록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거듭 밝힙니다.

「법정」은 어떠한 국가의 권위에 기초하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판결을 실행할 권력도 없습니다만, 판결을 널리 알리는 도덕적 책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1조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설치

국제실행위원회는, 「여성국제전범법정」(「법정」)을 2000년 12월, 토오쿄오(東京)에 설치합니다. 「법정」은 공개재판을 행하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 특히 제2차 대전 전·대전 중에 일본제국군이 자행한 범죄에 대해, 그 책임자를 소추합니다.

제2조

「법정」의 범위(한계?)(대상?)

「법정」은, 국제인도법에 기초하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재판합니다. 이것은 강간, 성노예 행사(「성노예」라고 하면 「제도」에 한정되는 듯이 들리기 때문에), 강제매춘, 강제 임신, 강제불임화, 기타 그 자체가 성폭력인 것이나 성폭력에 관련되는 것 등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포함하며, 인도에 대한 죄나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법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법정」은 이 헌장/규정/협정에 기초하여, 자연인, 법인 및 국가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국가원수, 군의 사령관과 책임있는 정부직원 등, 사람의 공적 입장이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형사책임

1. 이 헌장의 제2조가 서술하는 것과 같은 범죄 중 어느 것인가를 계획하고, 선동하고, 명령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 계획·준비·실행을 어떤 형태로든 방조 또는 교사한 자는, 각각 그 책임을 추궁당합니다.

2. 제2조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각각 그 책임을 추궁당합니다.

3. 공적인 입장에 있었던 자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완화된 처벌?형?mitigate punishment를 면할 수도 없습니다. 상사나 사령관은, 아래의 경우 부하가 범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a. 그 상사나 사령관이, 부하가 그와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혹은 이미 행한 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아야 할 사정이 있고, 게다가

b. 그 상사가 방지를 위해 또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필요에서 적절한 행위를 행하지 않은 경우

4. 범죄가 상사 또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도, 피고인에게는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국가의 책임

1. 자국의 군대가 이 헌장 제2조에 서술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국의 군대를 통제할 수 없었던 국가는, 그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인간을 지킨다고 하는 국제적 책무의 심각한 위반을 구성합니다.

2. 아래의 내용이 증명되면, 국가는 나아가 그 과실negligence에 대한 책임도 추궁당합니다.

a. 그 국가가, 상기의 범죄에 관한 사실을 감추거나 왜곡시킨 경우,

b. 그러한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소추·처벌하지 않은 경우,

c. 피해자에게 보상을 행하지 않은 경우, 및

d. 고의이든 아니든, 문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재판의 지역적·시간적 대상

1. 「법정」의 재판의 지역적 대상은, 일본제국군에 의해 점령된 모든 국가와 지역, 또 주민이 피해를 받은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 합니다.
2. 「법정」의 재판의 시간적 대상은, 1939년부터, 그 범죄의 영향이 인정되는 한 현재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

시효의 부적용

「법정」의 재판의 대상인 범죄에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법정」의 구성

1. 「법정」은, 인권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학자나 운동가로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재판관, 검찰관 등 「법정」의 담당관officials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국제실행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담당관을 임명합니다.
 - a. 여성의 인권의 정책 제언, 옹호나 추진에 대한 공헌
 - b. 국제형법, 국제인도법, 인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 c. 젠더 밸런스
 - d. 젠더나 성폭력의 범죄를 다룬 경험

제9조

절차

1. 「법정」의 담당관은, 범죄의 증거의 음미에 책임을 지며, 이 현장에 기초하는 범죄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소추의 절차를 개시합니다.
2. 절차의 개시는, 개인, 생존자, NGO 등 관심있는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행합니다.
3. 증거의 음미는, 젠더나 문화의 제문제, 또 피해자가 직면하는 트라우마의 문제에 충분한 배려를 기울이면서 행합니다.

제10조

서기국

국제실행위원회가 서기국으로서 기능하며, 「법정」의 사무와 원활한 실행에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법정」은 아래와 같은 것을 증거로서 접수합니다.

- a. 공문서, 선서공술서, 서명이 있는 진술서, 일기, 편지나 메모 기타 문서자료, 감정서, 사진 등의 영상시각자료
- b. 피해자, 목격자의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증언, 전문가에 의한 감정증언
- c. 관련된 기타의 물증

제12조

공판절차의 개시와 진행

1. 「법정」은 준비를 1년전부터 개시하며, 각 사례나 증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음미를 시작합니다.
2. (검찰관은 각 사례의 증거를 요약하여, 2000년 12월의 「법정」에의 제출에 대비합니다.
3. (증인을 듣는) 증거조사의 절차는 공개로 행합니다.
4. 「법정」의 작업에 이용하는 공통어는 영어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언어로 번역·통역을 합니다.

제13조

피해자와 증인의 참가와 보호

1. 「법정」은, 피해자, 증인 등 증언을 행함으로써 위험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합니다. 보호의 수단에는, 영상만에 의한 절차 등, 필요한 한 피해자의 신원을 비밀로 하는 보호수단이 포함되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정」은, 취급하는 범죄의 본질을 고려하고, 피해자, 증인, 성폭력의 생존자의 안전, 신체적·심리적 복리, 존엄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합니다?

제14조

판결

1. 「법정」은, 헌장 제2조가 서술하는 범죄 중 어느 것에 대해서 유죄라고 인정한 자에 대해, 판결을 언도합니다.
2. 판결은, 「법정」 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고, 공개된 장에서 언도됩니다. 판결에는 또 의견과 그 증거가 붙여집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권고 등도 포함됩니다.
3. 판결문의 사본은 공개하고, 역사적 사료로서 널리 배포합니다.

1. 일본측 수정안의 번역문을 보냅니다.
2. 전문을 보다 해끄럽게 다듬는 것, 그리고 제6조 2의 "1939년부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상세한 검토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99. 9. 16.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김 창 록